

# 국제법 현안 Brief



국제법 현안 Brief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박배근 교수 (부산대학교)  
 편집위원 김성원 교수 (한양대학교)  
 이기범 교수 (연세대학교)  
 오선영 교수 (승실대학교)  
 김현정 교수 (연세대학교)  
 투고문의 ksilbrief@gmail.com  
 웹사이트 www.ksil.or.kr

국제법 현안 Brief는 국제법 관련 현안문제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법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최근 현안과 관련된 국제법 쟁점에 대한 인식과 최근 국제법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유전자원 DSI의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쟁점

박병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 출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COP16 총회 및 GENRES-<https://www.genres.de/en/access-and-benefit-sharing/digital-sequence-information>

### 1. 논의 배경 - DSI가 왜 중요한가?

생물다양성협약(CBD)<sup>1</sup>과 그 하위협정인 나고야의정서<sup>2</sup>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기대했던 이익 공유 실적이 저조하자 생물다양성 부국인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이익 공유 금액과 이익 공유 대상 유전자원의 범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첨단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

로, 이른바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이하 ‘DSI’)를 이용한 연구개발 분야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동시에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이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증대하였다.

DSI 이용은 제약, 화장품, 식물 및 동물 육종, 보건, 의학, 식품 및 영양보충제, 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의 첨단기술인 합성생물학은 DSI를 핵심소재로 이용하면서 유전자원의 정보 가치가 급등하였다. 이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은 DSI

이용에 대한 국제규범의 마련을 주장하면서 DSI의 생성, 접근, 이용 및 저장,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런데 유전자원 DSI를 이용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공유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CBD와 나고야의정서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었다.

DSI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전자원 DSI를 이용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간 이익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다. DSI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DSI 이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명공학 분야에서 DSI를 이용하는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제품 생산에 DSI를 이용하는 산업계에게는 부담이 되는 민감한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국은 DSI 이용 관련 이익 공유에 관한 새로운 국제메커니즘을 이해하고, DSI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을 모색할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 유전자원 DSI 이용과 관련한 이익 공유문제는 CBD 뿐만 아니라 식량농업 분야(ITPGRFA<sup>3</sup>), 해양 분야(BBNJ협정<sup>4</sup>), 보건 분야(WHO PIP<sup>5</sup>와 WHO 팬데믹 조약안<sup>6</sup>), 지식 재산 분야(WIPO조약<sup>7</sup>) 등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 II. 논의경과 - DSI 논의는 2016년 CBD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체제 내에서 유전자원 DSI의 이용 관련 이익 공유에 관한 논의는 2016년 제13차 CBD 당사국총회(COP13)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당사국총회(COP14, COP15, COP16), DSI 특별기술전문가그룹(AHTEG),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GBF 작업반, DSI 작업반 등에서 DSI의 개념·용어·범위, 이익 공유 옵션, 이

익 공유 기준, 기금 기여, 기금 분배, 비금전적 이익 공유, 공공 데이터베이스, 거버넌스, 다른 국제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COP13 이후 DSI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2022년 COP15에서 유전자원 DSI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로 하는 원론적 합의를 담은 결정15/9<sup>8</sup>을 채택하면서 논의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COP15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sup>9</sup>(이하 'GBF'<sup>10</sup>)를 채택하고, 결정15/9를 채택하여 GBF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금을 포함한 DSI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다자간 메커니즘'<sup>11</sup>(이하 '다자간 메커니즘' 또는 '다자간 이익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결정15/9에 근거하여 DSI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는 '유전자원의 DSI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임시 개방형 작업반'<sup>12</sup>(이하, 'DSI 작업반')에서 이루어졌다. DSI 관련 논의의 목표는 유전자원 DSI를 제공하는 국가와 이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modalities)(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지)을 규율하는 다자간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다.

DSI 작업반은 다자간 이익 공유 메커니즘의 개발을 위한 회의를 2차례(2023년 11월에 제1차 회의<sup>13</sup>, 2024년 8월에 제2차 회의) 개최하였다. 특히 제2차 작업반 회의에서는 다자간 메커니즘에 포함될 요소인 DSI 이용자의 글로벌 기금에 대한 금전적 기여, 비금전적 이익 공유, 기금 분배에 대한 방법론 및 기준, 공공 DSI 데이터베이스, 다른 국제제도와의 관계, DSI에 대한 국가별 ABS 조치와 다자간 메커니즘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COP16에 제출할 권고문 초안(draft recommendation)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11월 1일 COP16에서 '글로벌 기금을 포함하여, 유전자원 DSI의 이용

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다자간 메커니즘의 운영 방식' 14을 규정한 결정16/2<sup>15</sup>을 채택하였다.

결정16/2는 전문(Preamble), 본문, 부속서(Annex) 및 6개 별첨(Enclosur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적인 내용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다. 부속서는 총 31개 항(paragraphs)으로, 다자간 메커니즘의 운영 방식의 요소로 금전적 기여(기금 기여), 기금 분배, 비금전적 이익 공유, 데이터베이스 관련 거버넌스, 다자간 메커니즘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결정16/2의 부속서에 포함된 다자간 이익 공유 메커니즘의 주요 내용을 쟁점 별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이하에서 표기된 조항은 결정16/2의 부속서에 포함된 31개 항을 의미함)

### III. 다자간 이익 공유 메커니즘의 주요 쟁점 및 합의 내용

#### 1. DSI가 무엇인지? - DSI의 개념(정의) 및 범위

유전자원 DSI<sup>16</sup>가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논의의 전 과정에서 쟁점이었다. DSI는 DNA 서열, RNA 서열(유전자 발현 정보), 단백질 서열(단백질 구조)과 같은 서열정보와 대사물질(metabolites)과 같은 부가정보가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된 데이터로 이해되지만 그 개념 정의 및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많은 국가들은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 논의를 위해서는, 이용 대상이 되는 DSI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적 명확성을 위해 DSI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나 국제법 영역에서 DSI를 정의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2023년에 체결된 BBNJ 협정도 DSI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협정 본문에 DSI에 대한 정의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정 16/2에는 다자간 메커니

즘의 적용 대상이 되는 DSI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1항). DSI라는 용어의 적절성과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DSI도 유전자원에 해당하며 또한 CBD 및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가?

DSI 이익 공유 문제에 대해 기존의 CBD와 나고야의정서의 법적 틀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의견이 대립하였다. 선진국들은 DSI는 무형의 정보로 유형의 물질이 아니므로 CBD 및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DSI는 '유전자원 이용'의 목적상 '유전자원'과 동등하기 때문에 협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논란은 COP15 결정 15/9와 GBF를 통해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일단락되었다. CBD 당사국들이 DSI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유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메커니즘을 수립하기로 하는 결정16/2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는 유전자원 DSI도 CBD 및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3. 글로벌 기금<sup>17</sup>에 기여하는 주체

금전적 기여, 즉 기금을 내는 주체와 관련하여, '모든 DSI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상업적 DSI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도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였다. 결론적으로는 제약, 화장품 등을 비롯한 특정한 산업 분야<sup>18</sup>에서 '상업적 이용자'를 대형, 중형, 소형 등 규모별로 구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기업에게 기금 기여 의무를 부과하고 중소형 기업의 경우 COP17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부과방식을 결정하기로 하였다(제3항과 제4항).

#### 4. 이익 공유의 의무화 여부

DSI 논의에서 핵심 사안인 이익 공유는 기금

기여를 포함한 금전적 이익 공유와 비금전적 이익 공유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이익 공유를 의무화할 것인지 아니면 권장 수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도 주요한 쟁점이었다. 이익 공유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COP 결정의 법적 구속력 문제를 고려하여 연성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결정16/2에는 “should”를 사용하고 있다. 다자간 메커니즘의 수립하는 근거 문서가 COP의 결정 형식으로 채택되어 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높은 수준으로 이익 공유를 의무화하지는 못하였지만 권장 수준 보다는 강하고 법적 의무화보다는 약한 수준(should)으로 규정하였다(제2항, 제3항, 제6항 참조).

#### 5. 글로벌 기금에 대한 금전적 기여의 기준/규모

실제 각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항이 금전적 기여의 규모에 관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수익 또는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의 어느 정도 비율로 기여하게 할 것인지를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제3항에 따르면, 3년 동안 평균으로 세 가지 기준(즉, 총 자산: 2,000만 미국 달러, 매출: 5,000만 달러, 수익: 500만 달러) 중 두 가지 이상을 초과하는 법인은 수익(profits)의 1% 또는 매출(revenue)의 0.1%를 기여해야 한다고 예시적 기여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시된 기준(threshold)은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고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2년 후에 개최되는 COP17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여, 앞으로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6. 기타 주요 내용 및 쟁점

1) 서비스도 금전적 이익 공유의 대상인지 여부  
금전적 이익 공유 대상을 ‘상품’(products)만으로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services)까지 포함할 것인지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서비스까지 포

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결정16/2 부속서의 별첨 I (Enclosure I)의 예시적 목록에도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 2) 금전적 이익 공유와 비금전적 이익 공유의 관계

DSI를 둘러싼 또 다른 핵심 쟁점은 DSI 이용에서 얻은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이익 공유에는 기금 기여와 같은 금전적 이익 공유와 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와 같은 비금전적 이익 공유가 모두 포함한다. 그러면 양자는 상호 대체적 관계에 있는가? 즉 비금전적 이익 공유를 제공하면 금전적 이익 공유 의무가 면제되는가? 이에 대한 의견도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6항을 살펴보면, DSI의 모든 이용자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면서 비금전적 이익 공유는 금전적 이익 공유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is complementary)라고 표현하고 있어 여전히 “보완한다”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기금 분배(disbursement of funds)의 방법론과 기준, 기금의 용도

글로벌 기금을 무슨 용도로,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도 쟁점이었다. 기금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성인지적 방식으로 할당하고(제17항), 기금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과학적 연구 지원, 그리고 특히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하여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IPLC)를 지원하고, 유전자원 DSI를 생성, 접근, 이용 및 저장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 경제체제 전환국의 협약의 목표 실현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원론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제18항). 그리고 기금 분배에 대한 예시적 기준을 제시하였을지만(별첨 II), 분배 공식은 COP17에서 결정하기 하였다(제19항).

#### 4) 이중 지불 또는 중복 규제 문제

DSI 이익 공유에 관련한 다른 국제 문서(예, ITPGRFA, BBNJ협정, WHO 팬데믹 조약안 등)에 의한 기금 지불과 CBD 상의 다자간 이익 공유 메커니즘에 의한 기금 지불이 이중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주요한 쟁점이었다. 국제법상으로 조약 간에는 동등하기 때문에 다른 협약상의 국가의 권리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다자간 메커니즘은 기존의 다른 국제협약상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문서 및 제도와 상호 지원하고 적응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 의무의 중복을 피하도록 하여 기존의 다른 국제협정에서 파생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제27항). 다른 국제협약상의 ABS 대상을 다자간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DSI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제1항(c))도 이러한 이중 지불 또는 중복 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V. 시사점 및 결론

COP16에 채택된 결정16/2에 의해 다자간 이익 공유 메커니즘의 주요 구성 요소 대부분이 합의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각국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배가 항구에 거의 도착한 듯 보이나 아직 부두에 정박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무료로 이용하던 유전자원 DSI를 이용하는 자들은 이제 글로벌 기금(이른바 Cali 기금)에 금전적 기여를 해야 한다. 즉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DSI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자간 이익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는 DSI 이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DSI 이용자, 특히 DSI

에 크게 의존하는 연구 및 산업 분야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DSI의 생성, 접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하게 하는 다자간 메커니즘이 연구와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CBD의 세 가지 목적(생물다양성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익 공유의 주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자를 이익 공유의 주체로 하고, 글로벌 기금에 대한 금전적 이익 공유의 주체는 상업적 이용자로 제한하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비상업적 이용자에게는 비금전적 이익 공유만을 적용하기로 한 합의는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기관의 비상업적 이용에도 금전적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자간 메커니즘의 요건 중에 하나인 “연구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결정 15/9 제9항 (e))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금전적 기여를 해야 할 산업 분야의 확대와 관련하여, 기존의 제약과 화장품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 관련 서비스 분야 등 DSI 이용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 분야를 광범위하게 목록화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와 관련 있는 산업계는 더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우선 DSI 이익 공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다자간 이익 공유 메커니즘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 마련 등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

- 1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은 생물다양성 보존, 그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의 촉진이라는 세 가지 목적으로, 1992년 5월 22일에 채택되어 1993년 12월 29일에 발효되었으며, 2024년 12월 현재 196개 당사국이 가입하고 있다.
- 2 CBD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는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으며, 2024년 12월 현재 141개 당사국이 가입하고 있다.
- 3 FAO,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ITPGRFA)(2001).
- 4 BBNJ Agreement,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2023).
- 5 WHO.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PIP) Framework for the Sharing of Influenza Viruses and Access to Vaccines and other Benefits(2011).
- 6 WHO, Proposal for the WHO Pandemic Agreement(2024).
- 7 WIPO, WIPO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24 May 2024).
- 8 CBD/COP/DEC/15/9(19 December 2022), 15/9.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 9 CBD/COP/DEC/15/4(19 December 2022), 15/4.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10 GBF는 4개의 목표(Goal A~D)와 23개의 세부 목표(Target 1-23)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표 C는 유전자원과 그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및 관련 전통지식의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공유를 보장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접근 및 이익 공유 문서에 실질적 이익 공유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목표 C** “유전자원,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은,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IPLC)를 적절히 포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고, 2050년까지 상당히 증가되도록 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ABS 문서에 따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함과 동시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도록 한다.” (밑줄 필자 강조)

세부목표 13 “유전자원과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와,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의 촉진 및 2030년까지 공유되는 이익의 상당한 증가 촉진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국제 ABS 문서에 따라,

-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인 법적, 정책적, 행정적 및 역량 강화 조치를 적절히 취한다.” (밑줄 필자 강조)
- 11 Multilateral Mechanism for Benefit-sharing from the Use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including a Global Fund.
  - 12 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Benefit-sharing from the Use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 13 제1차 DSI 작업반 회의는 글로벌 기금을 포함하여 DSI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다자간 메커니즘의 방식(modality)의 요소를 개발하기 위하여 COP 결정 5개의 클러스터(기금 기여, 기금 분배, 비금전적 이익 공유, 거버넌스, 다른 제도와의 관계)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였다.
  - 14 Modalities for Operationalizing the Multilateral Mechanism for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Senefits from the Use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including a Global Fund.
  - 15 CBD/COP/DEC/16/2(1 November 2024), 16/2.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 16 DSI라는 용어 이외에도 DSD(Digital sequence data), NSI(Nucleotide sequence information), GSD(Genetic sequence data), GS(Genetic Sequences),GSD/GSI(Genetic Sequence Data/Information), NSD(Nucleotide Sequence Data), DSD(Digital Sequence Data)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 17 COP16에서 다자간 이익 공유 메커니즘에 포함된 글로벌 기금의 명칭을 ‘Cali 기금’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 18 결정16/2 부속서의 별첨 I (Enclosure I)에서 유전자원 DSI의 이용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로 (a)계약, (b)건강기능식품, (c)화장품, (d)동물과 식물 육종, (e)바이오기술, (f)시약 및 소모품 포함 유전자원 DSI 시퀀싱 및 사용 관련 실험실 장비, (g)인공지능을 포함한 유전자원의 DSI 관련 정보,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필자 소개 ⋮

**박병도** 교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법 헌안 Brief**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대한국제법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